

공연법 시행령

<목 차>

- 1.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필요 조치 의무화
- 2.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설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 자	이름	김동하
	담당부서 (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예술정책관 이용신		연락처	044-203-2732
	과장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		이메일	eastblue21 @mail.go.kr

2026. 5. 2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국장 이용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필요 조치 의무화									
	2.규제조문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3.위임법령	공연법 제4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5.26~2026.7.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필요조치를 정함으로써, 암표 거래 방지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 입장권등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입장권 판매자(현장판매, 현장 판매 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의무사항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 ○ 이해관계자 : 공연자, 공연관람자 및 공연업계 ○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td><td>미정</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미정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미정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입장권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규정을 통해, 효과적인 암표 거래 현장단속을 위한 본인확인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정거래 게시물 등의 접근 차단을 통한 암표거래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 자 행정 부담 증가	암표거래 근절	없음						
		주요내용	○암표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게시물 차단 등의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는데 불과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도 불법게시물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에 반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								

			가하고 있고(2021년 785건 → 2025년 2,416건) 2025년 5월 4주 ~ 2026년 4월간 티켓 2차 거래 건수는 약 18만건으로(공연암표 신고기관 모니터링 결과), 암표 거래 방지 조치는 암표거래 근절을 통한 공연질서 확립 및 티켓가격 하락 등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3(입장권판매자 등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입장권등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공연 현장에서 판매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장시에 입장권 등의 소지자에 대하여 본인확인하는 조치 2.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현장 판매의 경우 제외) 가. 이용자가 입장권등을 거래할 때 본인확인하는 조치. 다만, 회원가입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계정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의 유통제한 조치와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부과 또는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리 알리는 조치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

현 행	개 정 안
	하는 프로그램의 판매나 대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한 경우 24시간 이내(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3.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조치 나. 제2호 나목에 따라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조치 다.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공정한 구입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판매나 대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하거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제외한다)를 청약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입장권등이 사용될 일자와의 근접성, 고액의 부정판매금액의 청약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시간 이내에 10일 이상 30일 이내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다만, 정보처리스

현행	개정안
	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 다목에 따라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이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관련 정보로 삭제 요청을 한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정보가 이용자가 검색어와 그 정보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식별·검색할 수 없도록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공연법」 일부개정(2026. 1. 29.)됨에 따라,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최근 K-팝 등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공연의 관람 수요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연관람을 위한 입장권 등의 수요 및 가격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 티켓 1매당 평균 가격 : ('23년) 61천원 → ('24년) 65천원 → ('25년) 70천원
- 따라서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조치를 의무화하여 암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법적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암표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연예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암표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관련 법제화 미비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 암표거래 게시물이 있어도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암표거래 게시물을 통한 암표거래를 방치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옴.
- 이에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공연법에서 위임한 입장권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의무 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연관람자, 공연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피규제집단인 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조치의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화
	내용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거래자 본인확인, 부정거래 게시물 차단조치 등 의무화
규제대안2	대안명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거래 방지 자율 규제
	내용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거래자 본인확인, 부정거래 게시물 차단조치 자율규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부정거래 방지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이에 따른 부정거래 근절 효과	부정거래 방지 조치 준수를 위해 사업자들의 행정부담 증가 우려
규제대안2	부정거래 방지 조치에 대한 민간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 경감	- 부정거래 차단조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자로 암표거래가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암표거래 근절이라는 공연법 개정의 입법취지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업체별 통일되지 않은 조치사항 등으로 인해 이용자 혼란 발생 가능성 높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장권 등 판매사업자 (놀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멜론티켓, 쿠팡플레이)	공연스포츠 암표방지 민관 협의체 3차 대면회의 (1차 3.31. / 2차 4.10. / 3차 4.21.), 서울	-부정거래 방지조치 관련 역할 명확·구체화	수용
통신판매중개업자(티켓베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네이버)	공연스포츠 암표방지 민관 협의체 3차 대면회의 (1차 3.31. / 2차 4.10. / 3차 4.21.), 서울	-게시물 조치기준 예외 필요(영업시간, 시스템 장애등)	수용
공연분야 협회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공연스포츠 암표방지 민관 협의체 3차 대면회의 (1차 3.31. / 2차 4.10. / 3차 4.21.), 서울	-현장판매시 본인확인 조치의무 필요	수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공연법 개정을 통한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화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화가 추진된 것으로, 조치의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암표거래 방지의 법적근거 미비로 개정의 입법취지(암표거래 근절)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암표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실공연관람자들의 정상적인 입장권 구매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입장권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의무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규제목표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 입장권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를 통해, 암표거래를 사전차단하고 최종적으로 암표거래를 근절함으로써 공연산업 전반의 공정한 예매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시행령안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방지조치를 통한 암표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이용자 본인확인 및 부정거래 게시물 차단 조치 등의 규정은 암표거래 단속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암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아시아	대만	본인확인 의무 부과	<법률 단계> - 티켓을 액면가 또는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자는 판매 티켓 수량에 따라 액면가 또는 정해진 가격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2항) - 컴퓨터나 기타 장비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술문화공연 티켓 구매 또는 예매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항) - 관할 당국은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여 암표거래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제4항) - 관할 당국은 암표거래 사실을 제보받은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재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5항)
	중국	본인확인 의무 부과	- 관객 수 50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연의 경우 1인 1매만 구매할 수 있고, 티켓 구매 및 입장 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티켓 구매자와 공연 입장자의 신원 정보가 일치해야 함(제8호 전단) - 공연 주최측과 티켓 판매 플랫폼은 무단 접근, 공개, 변조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제8호 후단) - 행사 주최자는 공인 티켓 판매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안내해야 함(제11호) - 문화관광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은 대규모 공연 주최자와 공연장의 업무 티켓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며, 업무 티켓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불법적으로 매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제13호)
	일본	본인확인 의무 부과	- 부정전매의 대상이 되는 특정 흥행 입장권을 1) 해당 흥행 입장권의 매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공연주최자의 동의가 없는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그 취지를 해당 흥행 입장권의 권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해당 흥행 입장권에 관한 전기 통신의 수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 단말 기기의 영상면에 해당 흥행 입장권에 관한 정보와 함께 표시시킨 입장권, 2) 흥행이 행해지는 특정한 일시 및 장소 및 입장 자격자 또는 좌석이 지정된 입장권, 3) 예매 시 구매자의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티켓 전면이나 전자티켓에 명시한 입장권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 처벌대상이 되는 부정전매의 개념을 공연주최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는 특정 흥행 입장권의 업으로서 실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시하는 유상 양도로서, 해당 특정 흥행 입장권의 판매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그 판매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4호) - 특정 흥행 입장권의 부정 전매 및 부정 전매 목적의 티켓 양수를 금지함(제3조 및 제4조) - 공연 주최자 등은 특정 공연 입장권의 부정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 장소에 입장하려는 자가 입장 자격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제1항) - 공연 주최자 등은 공연 입장권의 적정한 유통이 확보되도록, 공연 주최자 등 이외의 자가 공연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 공연 입장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제2항)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연주 등에게 특정 공연 입장권의 부정 전매 방지 및 기타 공연 입장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필요한 조언 및 협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제3항)
유럽	벨기에	본인확인 의무 부과	- 티켓에 관하여 플랫폼이 반복적·상습적 재판매에 사용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티켓재판매법을 개정하여 연방 조사관에게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플랫폼이나 위반 행위자의 이름 및 불법 행위 모델을 임시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영국	불법거래 모니터링 의무, 불법거래 관련 내용 표기 의무	-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찰 및 공연 주최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예매 페이지와 약관상에 1인당 구매 제한 수량을 명시적·기술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함 - 플랫폼은 매크로를 통해 위법하게 구매된 티켓이 자사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입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함 - 만약 매크로 부정 취득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대량 매물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소비자권리법 제92조의 범죄 보고 의무 위반이나 일반 형법상 방조 책임 발생함
미주	미국	부정구매 티켓 판매 차단 의무	- 티켓 발행자가 게시된 이벤트 티켓 구매 제한을 시행하거나 게시된 온라인 티켓 구매 순서 규칙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 조치, 접근 제어 시스템 또는 기타 기술적 제어 또는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행사 티켓을 주간 상거래 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됨 - 플랫폼이나 공연 주최자에게 암호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는 플랫폼이나 공연 주최자를 암호상의 매크로 공격을 당한 피해자로 보아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으로 파악됨

○ 타법사례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생략)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ㄱ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

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화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암표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게시물 차단등의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는데 불과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도 불법 게시물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반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2021년 785건 → 2025년 2,416건), 공연암표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2025년 5월 4주 ~ 2026년 4월 티켓 2차 거래 건수는 약 18만건으로, 암표거래 방지 조치는 암표거래 근절을 통한 공연질서 확립 및 티켓가격 하락 등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입장권 등 구매시 회원가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불법게시물 차단 조치 등이 시행 중에 있고, 시행령(안) 내 구체적인 내용은 피규제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피규제자인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또한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을 통해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 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임.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미 이용자 본인확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불법게시물 삭제 및 임시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시행령에 따라 암호거래 방지조치를 집행하는데 행정적 문제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연분야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통해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26년 950백만원)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공연분야 압표거래 근절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26.1.29)에 따라 입장권 예매처,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협회,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압표방지 민관 협의체('26.3.5~, 대면 4회 및 서면의견 제출)를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공연분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시행령은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이 위임한 입장권 등의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과 같이 부정거래 방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시행령은 '공연·스포츠 압표방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향후 수사기관 및 신고기관 등을 통해 조치의무 요청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임에 따라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압표거래 방지를 통한 공연자 및 공연관람자의 편익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암표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게시물 차단등의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는데 불과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도 불법 게시물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반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2021년 785건 → 2025년 2,416건), 공연암표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2025년 5월 4주 ~ 2026년 4월 티켓 2차 거래 건수는 약 18만건으로, 암표거래 방지 조치는 암표거래 근절을 통한 공연질서 확립 및 티켓가격 하락 등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활동제목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방지 조치 의무화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대상)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화 대상이 되는 업체는 예매처 29개사('25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및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4개사(티켓베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내외로 추정됨. － ▲암표 관련 공연암표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모니터링 결과('25년 5월 4주 ~ '26년 4월 4주 (25년 12월 2~4주 제외)), 2차 티켓거래건수 182,000건, 평균원가 168,592원으로 약 33개 내외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공연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한계) 다만,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니터링 하였기 때문에,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표 거래 게시물 수를 추정하는데 한계를 가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입장권 등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방지 조치 의무화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암표거래가 감소하면 암표거래로 발생했던 입장권 구매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고(1매당 280,899원 / 평균원가 168,592원, 평균 거래가 449,491원), 공연관람 실수요자들의 편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2차 티켓거래건수 182,000건)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설정			
	2.규제조문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4			
	3.위임법령	공연법 제4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5.26~2026.7.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부정 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암표 거래 방지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입장권등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입장권 판매자(현장판매, 현장 판매 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자료 범위 설정 - ▲매크로 판매, 대여 관련 정보 ▲입장권 등의 반복 청약 관련 정보 ▲부정판매 청약 관련 정보 ▲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요청한 조치(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결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 ○ 이해관계자 : 공연자, 공연관람자 및 공연업계 ○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입장권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료제출 범위설정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 자 행정 부담 증가	암표거래 근절	없음
		주요내용	○암표거래 방지를 위한 제출 자료 범위 설정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나,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제출을 이행 하는데 불과하며, 법률에서 규정된 자료제출의 범 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 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에 반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2021년 785건 → 2025년 2,416건) 2025년 5월 4주 ~ 2026년 4월 티켓 2차 거래 건수는 약 18만건으로(공연암표 신고기관 모니터링 결과), 암표 거래 방지 조치는 암표거래 근절을 통한 공연질서 확립 및 티켓가격 하락 등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자료) 법 제4조의3제3항 제5호의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초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2. 특정 사용자명이나 IP 주소에서 반복적으로 입장권등의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청약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3. 부정판매 청약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4. 제3조의3 제2호라목 또는 제3호 다목에 따른 신고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제3호 나목에 따른 신고, 삭제요청된 정보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조치의 결과 및 제3호 라목에 따른 노출 제한 조치 결과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공연법」 일부개정(2026. 1. 29.)됨에 따라,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확인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최근 K-팝 등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공연의 관람 수요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연관람을 위한 입장권 등의 수요 및 가격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 티켓 1매당 평균 가격 : ('23년) 61천원 → ('24년) 65천원 → ('25년) 70천원
- 따라서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을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암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제출의 법적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암표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공연예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 암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확인 자료 제출 의무 관련 법제화 미비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 암표거래 게시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법적근거가 없어, 암표거래 게시물을 단속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옴.
- 이에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공연법에서 위임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확인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료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암표단속의 실효성 높여 공연관람자 및 공연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보호하며, 피규제집단인 입장권 등 판매자,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 설정
	내용	부정 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료제출의 범위 설정 - ▲ 매크로 판매, 대여 관련 정보 ▲ 입장권 등의 반복 청약 관련 정보 ▲ 부정판매 청약 관련 정보 ▲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요청한 조치(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결과
규제대안2	대안명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압표 부정거래 확인 자료 자율 제출
	내용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압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확인자료 자율 제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부정거래 확인자료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이에 따른 압표거래 단속 실효성 제고	부정거래 확인자료 제출을 위해 사업자들의 행정부담 증가 우려
규제대안2	부정거래 방지 조치에 대한 민간 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 경감	-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자료에 따른 압표단속의 실효성 감소 - 또한, 업체별 통일되지 않은 자료 제출로 인해 압표근절의 입법취지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장권 등 판매사업자 (놀티켓, 티켓링크, 에스24, 멜론티켓, 쿠팡플레이)	공연스포츠 압표방지 민관 협 의체 3차 대면회의 (1차 3.31. / 2차 4.10. / 3차 4.21.), 서울	-부정거래 방지조치 관련 역할 명확·구체화	수용
통신판매중개업자(티켓 베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네이버)	공연스포츠 압표방지 민관 협 의체 3차 대면회의 (1차 3.31. / 2차 4.10. / 3차 4.21.), 서울	-게시물 조치기준 예외 필요(영업시간, 시스템 장애등)	수용
공연분야 협회 (프로스포츠협회,	공연스포츠 압표방지 민관 협 의체 3차 대면회의 (1차 3.31. /	-현장판매시 본인확인	수용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 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2차 4.10. / 3차 4.21.), 서울	조치의무 필요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공연법 개정을 통한 부정거래 확인자료 범위 규정은 암표단속 자료 제출의 법적근거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화가 추진된 것으로, 확인자료 범위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 근거 미비에 따른 자료제출 제한으로 법개정의 입법취지(암표거래 근절)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온라인 등으로 암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입장권등 부정거래 확인을 위한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규제목표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 입장권 등 부정거래 확인을 위한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료제출을 통해, 암표거래를 단속하고 최종적으로 암표거래를 근절함으로써 공연산업 전반의 공정한 예매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시행령안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 암표 거래를 방지하고, 이루어진 암표거래를 단속하려는 목적임.
- 또한, 부정거래 청약 관련 게시물의 정보 등의 자료 제출 규정은 암표거래 단속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암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아시아	중국	입장권등 거래 관련 정보 제출	- 문화관광행정부서는 공연 티켓 판매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고 티켓 판매업자의 자격 및 공연 승인 서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암표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공안기관은 공연 티켓 암표 단속 및 시정을 강화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티켓 암표 및 투기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티켓 가격 폭리 및 위장 가격 폭리의 단서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티켓 암표 및 사기와 같은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함
	대만	입장권등 거래 관련 정보 제출	-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10조의1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신고할 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 1.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예술 및 문화 공연 티켓을 부풀려진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웹사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시징 앱의 명칭이나 실제 위치 또는 관련 정보 3. 예술 및 문화 공연의 명칭, 행사 날짜, 장소, 좌석 구역 명칭, 좌석 번호, 입장 번호, 티켓 번호 또는 티켓 일련 번호, 티켓의 원래 판매 가격, 피고인이 판매한 티켓 가격 및 관련 증빙 서류 -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10조의1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신고할 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 1.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사업체의 이름 3. 예술 및 문화 공연의 명칭, 공연 날짜 및 장소 4. 개인이 허위 정보 또는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예술 및 문화 공연 티켓을 구매한 내역(로그)
	일본	입장권등 거래 관련 정보 제출	- 특정 흥행 입장권에 대해서는 소지인과 정당한 채권자(입장 자격자)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사실 관계의 문의나 흥행이 행해지는 장소에서의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저한의 조치로서, 성명 및 연락처의 확인 조치가 필요함 - 이 때의 연락처란 공연주최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입장 자격자 또는 구입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메일 주소, 회원번호 등을 의미함(제1호)
유럽	영국	입장권등 거래 관련 정보 제출	- 판매자와 해당 플랫폼의 각 운영자는 티켓을 구매하는 자에게, 해당 티켓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함(제90조제2항 및 제3항) - 티켓이 행사장의 특정 좌석 또는 입석 구역을 위한 것인 경우, 구매자가 해당 좌석 또는 입석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1. 좌석 또는 입석 구역이 위치한 행사장 내 구역의 명칭, 2. 구매자가 좌석 또는 입석 구역이 위치한 행사장 내 구역의 특정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 3. 좌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석이 위치한 열의 번호, 문자 또는 기타 식별 표시, 4. 좌석의 번호, 문자 또는 기타 식별 표시, 5. 구매자가 좌석 또는 입석 구역 또는 그 위치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유한 티켓 번호) - 티켓 사용을 특정 유형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 - 티켓의 액면가
미주	미국	별도 보유 의무 없음	- 플랫폼이나 공연 주최자가 암호방지를 위하여 확보해야 할 정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타법사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생략)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수사기관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①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종류·수량 및 금액
 -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설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암표거래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데 불과하며, 기존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집가능한 정보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에 반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2021년 785건 → 2025년 2,416건), 공연암표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2025년 5월 4주 ~ 2026년 4월 티켓 2차 거래 건수는 약 18만건으로, 암표거래 확인자료 제출을 통한 암표거래 단속 및 근절은 공연질서 확립 및 티켓 가격 하락 등에 미치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법률에 따라 부정거래 확인자료는 규정되어 있어 이미 자료 제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령은 그 범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안) 내 구체적인 내용은 피규제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피규제자인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또한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을 통해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임.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연법 및 시행령을 미준수 할 경우, 공연법 제 43조 제3항 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능하여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연분야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통해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26년 950백만원)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공연분야 암표거래 근절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26.1.29)에 따라 입장권 예매처,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협회,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암표방지 민관 협의체('26.3.5~, 대면 4회 및 서면의견 제출)를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공연분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시행령은 공연법 제4조의3제3항이 위임한 입장권 등의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과 같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시행령은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에 더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짐에 따라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부정거래 확인자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암표단속으로 공연관람자 및 공연자의 편익 증진이 클 것으로 예상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확률 정보표시 일반원칙 및 매체별 표시방법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암표거래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수사기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데 불과하며, 기존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집가능한 정보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반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2021년 785건 → 2025년 2,416건), 공연암표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2025년 5월 4주 ~ 2026년 4월 티켓 2차 거래 건수는 약 18만건으로, 암표거래 확인자료 제출을 통한 암표거래 단속 및 근절은 공연질서 확립 및 티켓 가격 하락 등에 미치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설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활동제목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설정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대상)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이 되는 업체는 예매처 29개사('25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및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4개사(티켓베이,종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내외로 추정됨. － ▲압표 관련 모니터링 결과('25년 5월 4주 ~ '26년 4월 4주 (25년 12월 2~4주 제외)), 2차 티켓거래건수 182,000건, 평균원가 168,592원으로 약 33개 내외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공연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한계) 다만,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니터링 하였기 때문에,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압표 거래 게시물 수를 추정하는데 한계를 가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설정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부정거래 확인자료 제출에 따라 압표 단속이 용이해지면, 압표거래가 감소하면서 압표거래로 발생했던 입장권 구매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하고(1매당 280,899원 / 평균원가 168,592원, 평균거래가 449,491원), 공연관람 실수요자들의 편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2차 티켓거래건수 182,000건)